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과제¹⁾

작성자 : 윤덕경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요약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참여를 통해 불법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 재유포로 이어지는 점, 완전 삭제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거기에 더하여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범죄수익 창출, 유포협박, 사전 범행모의, 오프라인 범행연계 등으로 지능화, 조직화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발생과 사건처리 현황, 관련 법률 내용 및 법적 공백을 검토하여 향후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개정 및 강화된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볼 것임
- 법 개정과 사건처리 기준, 양형기준에 따라 강화된 처벌이 철저하게 범죄자에게 내려져야 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제시한 제도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로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겁게 느끼도록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새로운 양상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비, 참여를 통해 불법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 재유포가 끝없이 이루어져 불법촬영물, 영상물이 어디에 유포되었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완전 삭제가 어려운 문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1) 본 원고는 윤덕경·김정혜·천재영·김영미가 2019년 수시과제로 수행한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II):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및 「제27차 젠더와 입법포럼」 발표자료를 일부 요약·발췌한 것입니다.

- 특히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사건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한 악질적인 범죄로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며, 유료화를 통한 범죄 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 조직화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구체적으로 성착취영상물 제작 및 공유, 강요, 협박, 강제추행, 강간, 아동학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착취영상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전송, 유포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중한 다양한 행위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여성가족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수사, 피해자 보호, 성착취물 유통금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대검찰청은 성착취 영상물 사건처리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조기차단과 강력한 처벌 및 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에 본 자료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범죄특성, 검찰처분 및 1심 재판결과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의 문제점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함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 디지털 성범죄 일반 현황

-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법적 근거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하여 2018년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 4,948명의 자료²⁾를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은 촬영(82.0%), 촬영+유포(9.4%), 유포/재유포(6.3%)의 순으로 나타났음³⁾
- 피의자 성별분포는 남성(94.0%), 여성(2.6%)이고, 피해자⁴⁾는 여성(80.3%), 남성(3.3%), 여성+남성(1.8%)의 순이었음
- 피의자와 피해자 관계의 경우 모르는 사람(62.6%), 연인(7.1%), 직장동료/친구(3.9%), 전연인/전배우자(3.5%) 순이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피의자는 20-29세(31.4%), 30-39세(23.5%), 19세 이하(18.7%)이고, 피해자는 20-29세(25.0%), 19세 이하(12.0%), 30-39세(6.9%)의 순이었음
- 범행동기는 기타, 미상(83.5%) 비율이 높아 제한된 정보 중 우발적(호기심)(7.1%), 성적 만족(7.0%), 보복(1.1%), 이익(1.0%), 질병 (0.3%), 자기과시(0.1%)의 순이었음. 남성 피의자는 성적 만족(7.4%), 우발적(호기심)(7.4%)이, 여성 피의자는 보복(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전반적으로 모르는 사람(62.6%), 불특정대상(66.7%), 신체 일부(45.1%), 공개장소(47.8%), 식별 불가능(48.5%) 대상의 촬영(82.0%)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범행동기는 우발적(호기심), 성적 만족이 비교적 높으나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피해유형은 촬영이 가장 높지만 그 다음으로 촬영+유포가 1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는데, 이전까지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웠던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피해가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 본 자료는 대검찰청이 제공한 2018년 접수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사건 피의자 4,948명에 대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불기소결정서 및 1심 판결문을 활용함.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www.kics.go.kr

3) 이 통계에는 확인불가능(2.3%)이 포함되어 있음

4) 피해자는 피의자 1인당 피해자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실제 여성 피해자 비율은 더욱 높을 것임

• **검찰처분 현황**

- 피의자 4,948명에 대한 검찰처분은 불기소 2,561명(51.8%), 기소 1,952명(39.5%), 소년보호송치 435명(8.8%) 순이고, 불기소처분(2,561명, 51.8%)은 기소유예 1,211명(24.5%), 혐의없음⁵⁾ 1,134명(22.9%), 각하 153명(3.1%), 공소권 없음 47명(1.0%), 죄가 안됨 9명(0.2%), 기타 4명(0.1%), 확인불가능 3명(0.1%) 순이었음. 기소처분(1,952명, 39.5%)은 구속 103명(2.1%), 불구속 1,161명(23.5%), 구약식 688명(13.9%) 순으로 나타났음
- 범행장소, 범행도구, 범행대상의 경중에도 기소율은 큰 차이가 없으며, 피해부위가 나체, 성관계 영상 등 죄질이 중한 경우에도 기소보다 불기소가 높게 나타났음. 촬영물이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한 불법포르노 사이트(20.5%), 웹하드/토렌트(13.3%)에 유포된 경우에도 기소율은 높지 않았음
- 구속율은 유포(8.9%), 성관계 영상(6.3%), 웹하드/토렌트(25.0%), 인터넷 커뮤니티(3.7%)로 성적 수치심이 크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제한 재생이 가능한 공간에 유포한 경우에도 높지 않게 나타났음

[표 1] 검찰처분 현황

(단위: 명, %)

계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송치
	구공판		구약식		
	구속	불구속			
4,948(100.0)	1,952 (39.5)			2,561 (51.8)	435 (8.8)
	103(2.1)	1,161(23.5)	688(13.9)		

• **촬영, 유포횟수가 높은 경우의 불기소처분 현황**

- 촬영횟수, 유포횟수를 중심으로 불기소 중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촬영횟수 11-49회(54.5%), 2회-10회(53.6%), 50-99회(46.7%), 유포횟수는 2회-10회(50.0%)인 경우 기소유예가 50%를 넘거나 5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촬영횟수 100회 이상(66.7%), 50-99회(53.3%), 11회-49회(40.9%), 유포횟수 50-99회(100.0%), 100회 이상(66.7%), 11회-49회(55.0%)인 경우 혐의없음이 50%를 넘거나 5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디지털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처분을 종합하면, 피해부위가 나체, 성관계 영상의 경우에도 불기소된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등 피해부위, 범행장소, 범행도구, 범행대상의 경중에 따른 기소, 불기소에 큰 차이가 없으며,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한 매체에 유포한 경우에도 기소율은 높지 않았음. 구속율도 성적 수치심이 크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제한 재생이 가능한 공간에 유포한 경우에도 높지 않게 나타났음. 또한 촬영, 유포횟수가 높은 경우에도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5) 혐의없음에는 증거불충분을 포함함

• 1심 선고형 연도별 분석(서울 소재법원)

- 1심 선고형 연도별 분석은 모두 서울 5개 지방법원(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2011년~2016년 4월, 2017년, 2018년의 3개 구간을 비교하였음
- 2011년~2016년 4월 구간은 전체 1,541명 중 벌금이 1,109명(7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집행유예가 226명(14.7%), 벌금+선고유예 115명(7.5%) 순으로 나타났음. 2017년 구간은 전체 370명 중 벌금 200명(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집행유예 103명(27.8%), 징역 41명(11.1%)의 순이었음. 2018년은 전체 506명 중 벌금 222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집행유예 220명(43.5%), 징역 52명(10.3%)의 순이었음⁵⁾
- 3개 구간을 비교해 보면, 벌금비율은 72.0% → 54.1% → 43.9%로 줄고 있고, 징역+집행유예 비율은 14.7% → 27.8% → 43.5%로 늘고 있음. 전체적으로 벌금비율이 줄고 징역+집행유예 비율이 늘어난 것에서 최소한의 처벌강화의 경향성이 보이고 있지만 징역형 비율이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어 범죄의 중함에 비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 1심 선고형의 연도별 비교(서울)

(단위: 명, %)

1심 형벌종류	2011년~2016년 4월 ¹⁾	2017년 ²⁾	2018년
징역	82(5.3)	41(11.1)	52(10.3)
징역+집행유예	226(14.7)	103(27.8)	220(43.5)
벌금 ³⁾	1,109(72)	200(54.1)	222(43.9)
벌금+선고유예	115(7.5)	22(6)	3(0.6)
무죄	9(0.6)	4(1.1)	9(1.8)
전체	1,541(100)	370(100)	506(100)

주: 1) 2011년~2016년 4월 통계는 한국여성변호사회(2016)에서 인용

2) 윤덕경 외(2018),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p.61에서 인용

3) 벌금에는 구약식에 의한 약식명령(법원 사건번호에 '고약'이 붙음)은 제외되고, 약식명령 중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법원 사건번호에 '고정'이 붙음), 1심 판결에 의한 것(법원 사건번호에 '고단'이 붙음)은 포함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현황

◎ 법률검토

• 관련 법률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이미지, 영상의 제작, 유통 등을 통해 현실공간상 물리적 접촉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크게 제작형, 유포형, 참여형, 소비형으로

5) '징역'은 징역, 징역+부수처분을, '징역+집행유예'는 징역+집행유예, 징역+집행유예+부수처분을, '벌금'은 벌금, 벌금+부수처분을, '벌금+선고유예'는 벌금+선고유예, 벌금+선고유예+부수처분을 의미함

구분됨. 이 범죄는 디지털 콘텐츠로서 가지는 복제되는 특성, 온라인, 오프라인의 유기적인 관계성, 집단적인 가해행위의 특성이 있음

- 디지털 성범죄의 4가지 유형의 개념구성은 디지털 기기의 이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적용을 수반하게 됨. 그 이외에도 사이버성범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죄가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온라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항을 두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 정책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에 열거한 조항들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로 묶일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변천 과정

법명	법 시행일자 및 규정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4. 4. 1.] [법률 제4702호, 1994. 1. 5., 제정] - 카메라 등 이용촬영 규정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1998. 12. 28.] [법률 제5593호, 1998. 12. 28., 일부개정] 제14조의2 (카메라등이용촬영) - 비동의촬영만 처벌 - 타인의 신체촬영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비동의촬영, 비동의 유포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의 비동의촬영물 비동의유포시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동의 촬영 후 비동의 유포시 처벌, 비동의 촬영시보다 처벌수위 낮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피해자 자신이 촬영한 촬영물의 비동의유포시 처벌추가 - 촬영과 유포 별도 규정화 - 비동의 촬영죄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 - 동의 촬영 후 비동의유포도 비동의 촬영과 동일하게 처벌 -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추가 - 영리목적의 동의, 비동의 촬영물, 복제물의 비동의유포시 벌금형 삭제 통한 처벌 강화(7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법명	법 시행일자 및 규정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 6. 25.] [법률 제17086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지인합성 법제화(제 14조 2 추가) - 반포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자, 이러한 편집물·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벌금형 상향조정(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 가중처벌(7년 이하 징역)

• 기타 사이버 성범죄

법명	규정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사이버음란물 유포죄(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10년 이하 징역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상 징역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과와 한계

• 성과와 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변천의 성과(처벌의 흠결해소)

- 1998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도입으로 비신체적 성폭력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성적인 속성을 가진 사생활 또는 인격권 침해범죄에 대한 처벌가능
- 2018.12.8. 법 개정으로 직접 촬영물이 아닌 복제물이 포함되어 화상채팅 중 불법촬영 화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재촬영하는 사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나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 처벌가능

- 다른 사람의 신체촬영으로 한정되었던 규정이 사람의 신체로 개정되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처벌가능
- 개인의 사진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여 유포하는 이른 바 ‘지인합성’은 개인의 얼굴을 이용한 사생활 및 성적인 인격권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 최근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2020.3.24. 개정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가능

기타 사이버 성범죄의 의의

- 실무상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고 특정부위를 채증하는 증거확보가 어려워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성범죄로 처벌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성폭력처벌법상의 불법촬영물죄에 따른 7년 이하 징역 처벌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음란물 유포죄의 1년이하 처벌을 받게 됨

• 한계

- 최근 ‘여고생 몰카’로 유통되는 여고생들의 전신 교복사진이나 성적인 신체부위나 노출이 없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과 유포행위는 유포되는 과정에서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언어적인 성희롱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에 전신 촬영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 불가능(장다혜, 2018:128)
- 합의된 성적 촬영물이 동의없이 유포된 이후 이를 제3자가 재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로서의 가중처벌 불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유형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사안발생 이후 법 개정이 더디게 진행되어 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해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앞으로도 사안발생에 따라 법이 계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법 적용, 집행에 혼란을 주고 피해자 보호에도 미흡한 상황을 초래함
- 디지털성범죄는 비신체적 성폭력으로 현실공간상 물리적 접촉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인격적 침해 범죄임. 여기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구성요건 요소가 이 범죄구성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범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요건으로 대체될 필요는 없는 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 판례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 누드, 성행위 장면 등은 해당/옷을 입은 타인의 신체 촬영시 옷차림, 노출 정도를 고려하거나 특별히 허벅지 부분이 아닌 전신 또는 신체의 일부가 촬영된 경우, 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이 함께 촬영된 경우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

-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인정 여부가 결정됨

보호법익

- 비동의 촬영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봄(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309)
- 동의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행위를 포함하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포함(헌법재판소 2016.12.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라고 할 수 있음

보호법익 전환의 필요성

- 우리 형법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 유형을 간음, 유사간음, 추행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정조를 보호법익으로 할 때 통용될 수 있는 개념임. 성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주관적 개념인 수치심, 혐오감, 도덕관념 등의 기준에 따름으로써 불명확성이 가중됨
- 인격적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 기준 역시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므로 적절한 기준으로 대체해야 할 것임
- 20대 국회발의 법안 중 ‘성적 수치심’을 ‘성적 모욕감’으로 대체하는 법안 존재(2013313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안). 해외 입법례중 음란행위, 성적 수치심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외설적 행위를 ‘성적’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함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적 대상으로 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설명하거나 ‘성적 불쾌감, 모욕감’ 등 피해감정의 표현을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용어의 대체 이외에 사회적 법익인 음란성을 대체하여 ‘성적인 사생활 침해’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있음(장다혜, 2018:269)

⊕ 법률 제·개정방향

• 형법에 사생활 침해범죄 신설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

- 1) 형법 제316조의 2 사생활 침해범죄의 기본범죄 유형화
- 2) 성적 속성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성폭력처벌법에 규정
- 3)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개정
 - ‘이미지를 이용한 성적인 사생활 침해 등’을 표제로 함
 - 제1항 : 형법 제316조의 2의 범죄가 공공장소 또는 사생활이 보호되는 장소에서 취득한 이미지에 관한 경우 처벌. 이미지는 촬영되거나 편집되거나 재촬영한 행위를 말함
 - 가중처벌규정 : 제1항의 행위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

- ① 동의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행위
- ②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 등에 침입하거나 원거리에서 엿보는 행위와 함께 이루어졌을 때
- ③ 이미지에 묘사된 사람이 식별가능하거나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된 경우
- ④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파한 경우
- ⑤ 제1항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협박, 강요,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성적 수치심 → 성적 모욕감, 성적 불쾌감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 타인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로 대체(장다혜, 2018:269)

4)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하는 안 제시

- 디지털 성범죄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로 정의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이외에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성범죄 등도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로 포섭하여 처벌강화와 수사, 소송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확보
-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의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이용 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이 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 이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사이버 음란물 유포)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 최근 법 개정 및 사건처리 기준 제정

- 형법 개정(2020.4.29. 국회 본회의 통과)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 피해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여 미성년자 보호공백 해소,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처벌하여 강간 등의 경우 실제 범행에 이르지않고 준비, 모의만 한 경우도 처벌
- 성폭력처벌법 개정(2020.4.29. 국회 본회의 통과)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죄 등의 법정형 상향,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처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강요한 자 처벌,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 처벌

- 대검찰청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을 제정·시행(2020.4.9.)하여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대검찰청, 보도자료, 2020.4.9.),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대폭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 중에 있음
-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20.4.23.)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잠입수사 도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 신설, 인터넷 사업자 책임강화와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0.4.23.).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20.5.7. 의안번호 24926)이 발의되어 있음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향후 개선방향**

-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개정된 법, 검찰 사건처리기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동 범죄에 관한 강화된 처벌이 실제 사례에서 제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징역형의 법정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이것을 해소하고 범죄자의 불법행위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제도개선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 잠입수사 도입,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 신설, 인터넷 사업자 책임강화와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제 및 독립몰수제 도입에 관한 조속한 입법이 실현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개정법의 실현과 조속한 입법 이외에 위에서 제시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사생활 침해범죄로의 형법, 성폭력처벌법 개정과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의가 신설되어 디지털 성범죄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